국무총리 훈령 제182호

공무원후생복지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(안)

1. 설립 및 감독

가. 각 단체는 설립과 감독의 근거를 명백히 할 것.

나. 각 단체는 보유 기금 및 사업운영 규모에 상응하는 단체의 형태를 취하여 운영과 감독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.

다. 동일기관내에 후생복지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중복 설립되지 않도록 할 것.

라. 각 단체는 년 1회이상 결산 보고와 자체 감사를 제도화 할 것.

2. 사업운영

가. 각 단체는 전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후생복지 위주의 사업을 선정하고 목적사업에 행정기관 고유업무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.

나.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을 강구할 것.

다. 각종 기부금 지급 기준은 단체의 수입 및 기금증식을 감안,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상조금 지급은 사유발생시 자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.

라. 대부사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부금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특정인 편중 대출이 없도록 할 것.

마. 경지집행에 있어 경상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, 섭외경비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낭비의 소지를 제거할 것. 특히, 감독기관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엄금할 것.